

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(MOU)

대구대학교와 (재)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(이하 “재단” 이라 칭함)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(이하 “본 협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【협약목적】 본 협약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협력내용】 양 기관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활동에 대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.

1. “대구대학교” 와 “재단” 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취·창업 특강, 박람회, 기업설명회 등의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양 기관의 인적자원 및 교육공간을 상호 활용한다.
2. “대구대학교” 는 “재단” 교육생들이 창업생태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(창업지원단, 창업보육센터)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멘토링, 시설 등 이용을 지원한다.
3. “대구대학교” 와 “재단” 은 교육생들의 교육·연구에 적합한 주거·보건·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 내 시설을 제공하며, 다양한 문화 콘텐츠 이용을 지원한다.
4. “대구대학교” 와 “재단” 은 보유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협력을 강화하고, 상호협력 하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, 대외적으로 홍보한다.

제3조 【협약원칙】

1.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양 기관의 실무부서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
2. 본 협약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.

제4조 【협약기간】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, 그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일방 기관이 서면 해지 요청이 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
제5조 【신의성실 및 비밀유지의 의무】

1.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성실히 협조한다.
2.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.

제6조 【효력발생 및 기타】

1.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2. 본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3. 본 협약은 제4조와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양 기관 간에 추가적인 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계약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“대구대학교”와 “재단”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3월 13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박순진

박순진



학장 이현수

이현수